

의안번호 제65호

2018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

| 제 출 자 | 논 산 시 장 |
|-------|-------------|
| 제출연윌일 | 2017. 9. 8. |

2018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호 제65호

제출연월일 : 2017. 9. 8. 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O 2018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【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현황】

- O 설립일 1998.12.28.
- O 일반현황 임원현황 : 이사 12명, 감사 2명
 - 기본재산 : 3,634,000천원
- O 설립목적 인재육성을 위한 초·중·고·대학생에 대한 장학사업
 - 면학시설 확충에 필요한 관내 초·중·고·대학교 지원사업

□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: 400,000천원

O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·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출연

□ 출연계획 (최근 5년 출연 현황)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출연금 (시비100%) | 400,000 | 400,000 | 400,000 | 400,000 | 400,000 |

□ 관련법규

- O「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O 「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」
- O「지방재정법」

참고

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

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6.11.30.] [법률 제14196호, 2016.5.29., 일부개정]

행정자치부(공기업과), 02-2100-3551

-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- 1. 문화, 예술, 장학(장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- 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·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0.9.30.] [조례 제677호, 2010.9.30., 전부개정]

평생교육과, 041-746-5761

제7조(출연금) 논산시는 장학회의 장학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17.3.30.] [법률 제14113호, 2016.3.29., 타법개정] 행정자치부(재정정책과). 02-2100-3506

-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〈개 정 2014.5.28.〉
 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 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〈개정 2014.5.28.〉
 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 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 - ③ 삭제 〈2013.7.16.〉

[전문개정 2011.8.4.]

[제목개정 2014.5.28.]

- **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4.5.28.〉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〈신설 2014.5.28.〉
 - ③ <u>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</u>다. 〈개정 2014.5.28.〉 [전문개정 2011.8.4.] [제목개정 2014.5.28.]